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8. 23 선고 2021나2611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8. 23 선고 2021나26115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4. 8 선고 2020가단3152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1. B

2. C

변론 종결 2022. 7. 12.

판결 선고 2022. 8. 23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4. 8. 선고 2020가단3152 판결

주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- ① 피고 B는 당사자로 원고를 포함한 D, E과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F리 환지지구 공유물분할 등에 관련하여 전부 합의한 사실을 확인한다.
- ②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. 7. 15.자 정산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을 제25호증 등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제1심판결 제3쪽 글상자 안의 제1항 중 (3) 재분할토지 지번 아래의 B(C) 지번 'S'을 'AL'으로, 'M'을 'AK'로, D의 지번 'Z'을 'AM'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김성곤

판사이홍관

판사윤동연

별지